

<p>하여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p> <p>-당연직 이사장은 안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므로 당연직 이사장인 이사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처럼 이사회 추천 그리고 이사장 제청을 통한 시장 임명 방식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p> <p>(2)지도・감독(안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17조에 의하여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p>-이는 우리 시 타 재단법인인 산업진흥재단, 세종문화회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으로 여겨짐.</p> <p>-여성플라자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은 전문가에 의한 민간자율과 책임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인 만큼 타 재단법인 수준으로 시의 감독기능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p> <p>3)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의 사업내용,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수익사업, 운영재원사업년도, 사업 계획서・결산서 등 제출, 업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근거규정 등의 사항은 서울시가 출연한 다른 재단법인 설립・운영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p>4. 질의 및 답변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p>5. 토론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구성 	<p>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참석 위원 전원 일치)</p> <p>가. 수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2002년 개관 예정인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독립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 상임이사의 임명방식을 재단법인의 자율성 내지 책임경영의 효율성과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이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p>8. 소수의견의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p>9. 기타 필요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p> <p>안 제9조제2항 중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제청으로”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여성」(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 법인으로 설립한다.</p> <p>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 자원화 사업 4.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7.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	--

<p>8.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9.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법 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이사는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서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p>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쟁력 제고,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9

2001년 9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2001년 9월 10일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창구 전설국장)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2000. 7. 1부터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3조)
 -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점용 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함.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함으로써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공동구 설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4조)
 -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점용료

- 공동구에 수용되는 점용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함.
(다만,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남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남부 할 수 있도록 함.)

-사용료

-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되며, 최초년도분은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로 하며,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년도 3월 말로 함.
-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함.
-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현행 조례의 공동구설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삭제함.
 -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2000. 7. 1)과 관련하여

- 현행 조례상의 일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공동구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 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전제적인 조례 구성체계를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 본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 설치비용부담 및 공동구에의 수용 등에 관한 현행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하거나 관련 조례안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영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37조 및 영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동구 점용료 등의 부과